

재해 복구 중 사기 방지하기

사기꾼들은 종종 재해 복구 중에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인 재난 사기에는 부실 공사 및 허위 증서 양도가 포함됩니다.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갖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택 수리 및 재건을 위한 법적 보호

캘리포니아 법에는 자연 재해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주택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0 달러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800-321-2752** 로 전화하거나 www.cslb.ca.gov 를 방문하여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서 모든 계약자의 면허 및 자격 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1,000 달러 또는 총 공사 프로젝트 가격의 1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과 진행 대금은 완료된 작업의 총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직 완료하지 않은 작업이나 아직 납품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변경 사항 또는 “변경 주문”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귀하와 계약자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 가격의 변경 사항에 대해 금융 기관에 알리십시오.
- 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불한 금액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연락하세요. 계약자는 취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용자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자에게 집을 지불 보증으로 제시하는 담보권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일 3 일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에게 전화 또는 방문으로 직접 연락하는 계약자와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 귀하의 집이나 계약자의 일반적인 사업장 외부에서 서명했습니다.
- 재해로 인해 귀하의 집이 피해를 입은 후 7 일 이내에 서명했습니다.

재난 후 사기를 피하기 위한 팁

1. **개인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지 주의하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대피소나 호텔에서 접근하는 변호사나 공인 조정자(public adjuster)를 믿지 마세요. 대신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찾아보세요. 정부기관은 지원 신청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FEMA 요원은 항상 공식 신분증을 휴대합니다. FEMA와 SBA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실제 FEMA 요원과 얘기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FEMA 헬프라인 1-800-621-3362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십자(Red Cross) 직원과 얘기하는 것인지 확인하려면 1-800-RED-CROSS (1-800-733-2767)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보험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험증권번호나 보장 내역과 같은 보험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3. **건설 또는 지원에 대한 방문 제안과 공격적인 마케팅에 주의하십시오.** 재난 발생 후 평판 좋은 주택 수리 업체는 다른 많은 작업과 건축 자재 부족으로 인해 작업 수행이 느릴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 나타나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전단지를 만들거나, 종종 전문적으로 보이는 사업 웹사이트나 가짜 고객 평이 있는 Facebook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폭풍을 쫓는 자(storm chasers)”를 주의하세요. 이러한 사기꾼은 종종 선불을 받고, 거의 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며, 추가 지불을 요구한 다음에 사라집니다.
4. **면허가 있는 계약자를 고용하십시오.** 500 달러 이상의 주택 개조 공사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계약자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CSLB)에는 면허번호, 상호명 또는 주택 개량 판매원 등록 번호(Home Improvement Salesperson Registration number)로 계약자를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www.cslb.ca.gov를 방문하거나 1-800-321-2752로 전화하여 계약자가 면허 및 보증을 받았는지, 보험 및 산재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5. 전체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선불 결제를 하지 마십시오. 계약금은 총 공사 가격의 10% 또는 1,000 달러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평판이 좋은 계약자는 작업 과정에서 진행 대금을 수령합니다. 계약금과 이러한 진행 대금은 완료된 작업의 총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에 대한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계약의 경우 서명 후 7 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난 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체결된 원치 않는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후회가 있거나 사기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신속하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알아보세요.

사기 신고하기

- 사기 가능성을 신고하려면:
 - 캘리포니아 검찰 총장: www.OAG.ca.gov/report
 -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562) 345-7600 으로 전화하세요
- 계약자에 대한 불만 제기하기:
 -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www.cslb.ca.gov/Consumers/Filing_A_Complaint 또는 (800) 962-1125

자세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 자료를 확인하세요.

재난 지원 센터 – 계약업체 고용하기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재난 지원 센터 – 기타 서비스 및 자원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요약 정보: 재해 후 재건하기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요약 정보: 잔해물 제거 및 건설 사기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기상 비상 사태 및 자연 재해 후 사기를 피하는 방법

(연방 통상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